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7 호
----------	--------

제출일자	2004. 11. 15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현실과 괴리된 문제점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의 명확화

- 적당한 배수설비 설치 ⇒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9의2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나. 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별로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승인된 기본 계획에 맞게 정비

- 사남농공단지 및 신규지정 농공단지
 -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 SS : 부유물질
 - T-N : 총질소
 - T-P : 총인
- 송포농공단지
 - 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
 - SS : 부유물질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5호규정에 의거 생략

3) 의견수렴 결과(2004. 9. 18 ~ 2004. 10. 9, 사남·송포농공단지협의회) 제출된 의견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적당한”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9의2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남농공단지 및 신규지정 농공단지

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SS : 부유물질

라. T-N :총질소

마. T-P : 총인

2. 송포농공단지

가.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다. SS : 부유물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추가 부담금)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관거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전	개 정 후
<p>제8조(배수설비의 설치)①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u>적당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u></p>	<p>제8조(-----)①----- ----- -- <u>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9의2의 규정에 의한</u> ----- ----- -----</p>
<p>제14조(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u> 2. <u>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u> 3. <u>S S : 부유물질</u> 	<p>제1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남농공단지 및 신규지정 농공단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u>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u> 나.<u>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u> 다.<u>S S : 부유물질</u> 라.<u>T-N : 총질소</u> 마.<u>T-P : 총인</u> 2. <u>송포농공단지</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u>BOD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u> 나.<u>COD : 화학적 산소요구량</u> 다.<u>S S : 부유물질</u>
<p>제27조(부담금 추징)시장은 사업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오·폐수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p>	<p>제27조(추가 부담금)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관거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p>

관계 법령 발췌

수질환경보전법

第23條 (환경기술인<개정 1992.12.8, 2004.2.9>)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 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的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기술인의 관리사항을 監督하여야 한다.

④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기술인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 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기술인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環境기술인의 資格基準·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質汚染이 惡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水質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안의 各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共同으로 처리하여 公共水域에 排出하게 하기 위하여 廢水終末處理施設(이하 "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終末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 水質汚染의 원인을 직접 惹起한 者는 따로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4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長官이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 ①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設置(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終末處理施設에서 廢水を 처리할 수 있는 地域(이하 "共同處理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4.8.3>

第27條 (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共同處理區域안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및 廢水を 排出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

습으로 정하는 者는 당해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廢水を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排水管渠등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한 事業者는 終末處理施設이 처리하는 汚染物質에 대하여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할 排水設備의 設置方法·構造基準등은 環境部습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法습에서 이에 관하여 規定한 경우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第14條 (防止事業의 종류)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防止事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및 운영사업
2. 工場 또는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地域에서 大氣汚染으로 인한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綠地의 形成, 中央熱供給施設 및 公共用 綠地의 設置와 그 管理事業
3. 環境汚染의 원인이 되는 汚染物質에 의하여 被害가 발생한 農耕地·漁場·山林 또는 農業用 施設에 대하여 실시하는 客土·削土·覆土·浚渫事業, 土壤改良劑施用 事業, 山林 또는 農業用 施設改築事業
4. 특정한 事業者의 事業活動에 주로 이용되는 排水設備등 施設의 設置事業
5. 環境汚染으로부터 地域住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住宅 기타 施設의 移轉事業
6. 기타 環境汚染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습이 정하는 사업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事業의 일부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 및 同 公團이 同法 第17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한 法人
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3. 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資本誘致促進法 第2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者에 준하는 防止事業 實施能力을 가진 者로서 大統領습이 정하는 者

第20條 (強制徵收) ①環境部長官 또는 施行者는 改善負擔金과 防止事業負擔金を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간내에 그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日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の 5에 상당하는 加算金を 賦課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負擔金を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管理公團이 施行者인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環境管理公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の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으며, 이를 委託받은 市長・郡守・區廳長은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管理公團은 徵收된 금액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7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6조로 이동]

[별표 9의2] <개정 2002.10.1>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제47조관련)

1. 배수관의 관경은 내경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100mg/l이상인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